

## 참고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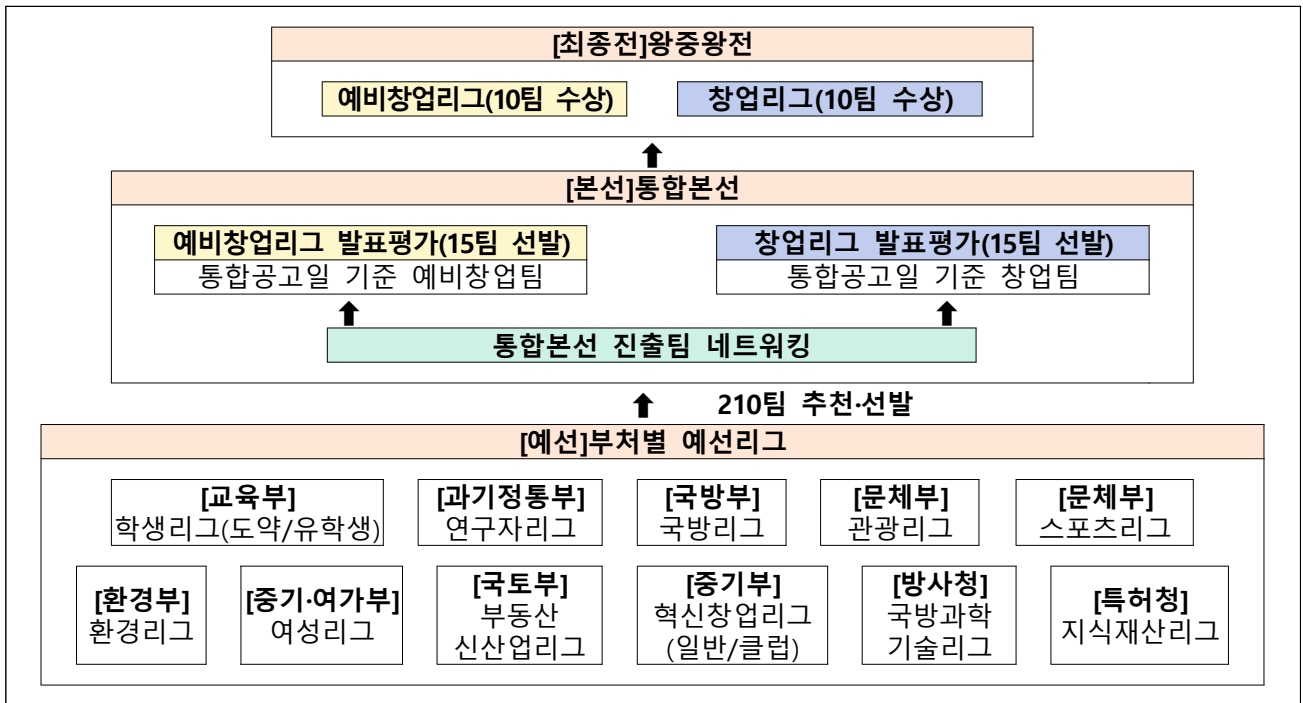
# 도전! K-스타트업 2024 대회 개요('24년 모집공고문 별첨 / 참고용)

□ **(목적)**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한 (예비)창업팀을 발굴·포상하여 親창업분위기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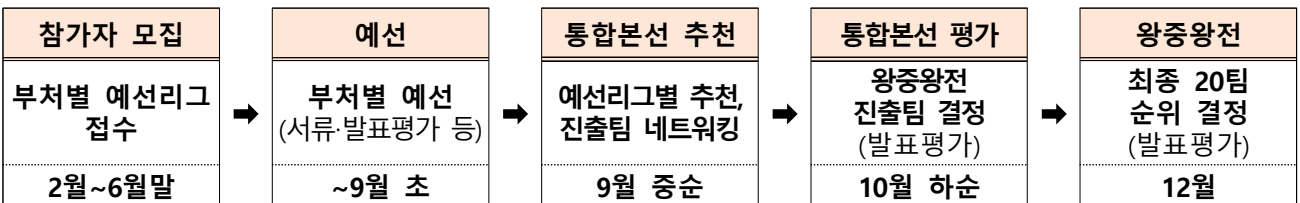
□ **(대회 운영 방식)** 참여 부처별 예선리그를 거쳐 우수 참가팀을 선발·추천하고, 통합본선\*과 왕중왕전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자 선정

\* 통합본선 단계부터는 진출팀 창업 여부(통합 공고일 기준)에 따라 예비창업리그와 창업리그로 구분하여 진행

### < 도전! K-스타트업 2024 운영 체계 >



## □ 대회 운영 일정



\*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세부내용은 예선리그별 세부 공고문 확인 필요

## 참고 2

## 도전! K-스타트업 2024 참가 자격 및 제외 대상

### □ 참가 자격 및 제외 대상

- (참가자격) 도전! K-스타트업 2024의 공통 참가 자격과 참여하고자 하는 예선리그의 참가자격\*을 모두 준수해야함

\* 각 예선리그별 세부 공고문 참조

#### < 도전! K-스타트업 2024 공통 참가 자격 >

공통기준 (판단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통합공고일(24. 1. 29.)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</li> <li>•(업력) 사업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</li> <li>•(창업이력 제외 사항) 아래 ①~③이력은 본 대회 '참가 자격'과 '제외 대상'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 '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'</li> <li>②「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해당하는 '창업이력 제외대상'</li> <li>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,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</li> </ul>
구분	세부자격
예비 창업자(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신청자(팀장)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</li> <li>※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('17. 1. 29. 이후 창업)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</li> </ul>

- (제외 대상)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

#### < 도전! K-스타트업 2024 참가 제외 요건 >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
-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"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~ 2023" 기 수상자 (팀원 포함) 또는 수상 아이템 (왕중왕전 특별상·입상자 제외)
-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
  - \*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·공공·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'창업경진대회'와 '창업 아이디어 공모전'을 포함
  - \* 상금은 '기타소득'으로 한정하며, 기술개발,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지원금과는 별개
  - \* 예비창업팀의 경우 '팀장'(팀원제외), 기 창업자의 경우 '대표자'와 '창업기업' 수상 내역 확인
- '24년 행정안전부 주최 「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」 통합본선에 동일·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(팀)
  - \*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,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 판단
-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(기업) 또는 아이템